

2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및동법시행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1999-31호 1999. 5. 10.

개 정 취 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등록 및 매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한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0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서비스분야의 고용확대등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서비스분야의 자격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기관내에 검정관리운영규정 제정·시행 등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 1)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및 등록·갱신등록 관련 규정을 정리함.
- 2) 필기시험 면제사유가 2개이상인 자가 각각의 면제사유에 의해 당해 회차의 실기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한 종목의 당해 회차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게 함.
- 3) 등록의무 폐지에 따라 기술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정함.
- 4) 상위등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줌으로서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함.

- 5)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기관 내에 검정관리운영규정 제정·시행 등의 책무를 부여함.
- 6) 지식기반확충과 서비스분야의 고용확대등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사무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신설함.
- 7)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1)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및 등록·갱신등록 관련규정을 정리함.
- 2) 기능사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필기시험 면제 및 산업기사응시자격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3)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기관의 검정관리운영규정의 세부사항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
- 4) 사무서비스분야의 자격종목 신설에 따른 자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시험과목을 규정함.

주택회보